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8,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아동청소년과)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8,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424
----------	-----

제출년월 : 2025년 3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 1. 제안이유

가. 「이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우리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14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나.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8,9호점」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유형	위치	규모	정원	위탁법인 협약기간	개소일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2021.10.01~2025.05.31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호점	일반형	길음로118, 404동 101호 길음뉴타운4단지 (길음1동)	84㎡	20명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2021.10.01~2025.05.31	21.10.01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8호점	일반형	송인로 50 래미안길음센터피스 (길음2동)	106㎡	26명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2021.03.01~2025.08.31	21.03.01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9호점	일반형	보국문로16길 2, 2층 (정릉4동)	90㎡	23명	사단법인 해피피플 2021.03.01~2025.06.30	21.03.01

##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8,9호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8,9호점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8,9호점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 기타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3. 관련근거

###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